

2023년 상반기 DB손해보험 현황

기간 : 2023.1.1-2023.6.30

DB손해보험(주)

본 공시자료는 보험업감독규정 7-44조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증명합니다.

목 차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II. 재무·손익

III. 자산의 건전성

IV. 자본의 적정성

V. 수익성

VI. 위험관리

VII. 기타 일반현황

VIII. 재무제표

I. 주요 경영현황 요약

1-1. 주요 경영지표

(단위 : 억원, %, %p)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재무·손익	자 산	442,266	454,006	(-)11,740
	부 채	356,636	364,868	(-)8,232
	자 본	85,630	89,138	(-)3,508
	당기순이익	9,181	9,370	(-)189
건전성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전)		—	—
	지급여력비율 (경과조치 후)		—	—
수익성 비율	운용자산이익률(A/B)	3.58	3.42	0.16
	영업이익률	11.67	5.27	6.40
	총자산이익률(ROA)	4.12	4.10	0.02
	자기자본이익률(ROE)	20.26	23.15	(-)2.89

- * 지급여력비율은 9월말 공시 예정임 (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 * 지급여력비율은 신지급여력제도(K-ICS) 도입 이후 수치만 산출 가능 (전 생·손보사 공통사항)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 재무·손익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 * 운용자산이익률에서 A는 투자이익에 해당하며, B는 경과운용자산에 해당함
-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22.2Q IFRS4/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단, 직전 1년 실적 산출시 23년 IFRS17/9, 22년 IFRS17/IAS39 적용
- * 총자산이익률(ROA), 자기자본이익률(ROE)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1-2.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 %p)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신계약률		56.83	67.98	(-)11.15
효력상실 및 해약률		4.03	3.37	0.66
보험금지급률		66.26	69.94	(-)3.68
자산운용률		93.94	96.10	(-)2.16
유지율	13회차	88.70	90.37	(-)1.67
	25회차	77.42	77.12	0.3
	37회차	64.36	62.92	1.44
	49회차	55.39	46.29	9.1
	61회차	41.14	41.39	(-)0.25
	73회차	37.46	39.85	(-)2.39
	85회차	36.46	47.19	(-)10.73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보험금지급률 : 22.2Q IFRS4/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 자산운용률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주) '효력상실 및 해약률'과 '유지율'의 경우 장기보험종목에 대한 지표임

II . 재무·손익

2-1. 요약 포괄손익계산서(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 감
보험 부문	보험손익	9,113	9,338	(-)225
	(보험수익)	68,642	64,478	4,164
	(보험서비스비용)	58,005	54,040	3,965
	(재보험수익)	2,885	2,760	125
	(재보험서비스비용)	3,740	3,270	470
	(기타사업비용)	669	590	79
투자 부문	투자손익	2,978	3,237	(-)259
	(투자수익)	16,200	15,643	557
	(투자비용)	13,222	12,406	816
영업이익 (또는 영업손실)		12,091	12,575	(-)484
영업외 부문	영업외손익	58	25	33
	(영업외수익)	207	180	27
	(영업외비용)	149	155	(-)6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		12,149	12,600	(-)451
법인세비용		2,968	3,230	(-)262
당기순이익		9,181	9,370	(-)189

* 주요변동 요인 : 당기순이익은 9,181억원으로 전동기 대비 189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22.2Q IFRS17/IAS39, 23.2Q IFRS17/9기준)의 반영, 보험손익 전기대비 255억원 감소, 투자손익 전기대비 259억원 감소, 영업외손익 전기대비 33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2. 요약 재무상태표(총괄)

(단위 : 억원, %)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자 산	현 금 및 예 치 금	5,688	1.29	7,296	1.61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107,647	24.34	-	-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	-	-	11,162	2.4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유가증권	181,469	41.03	-	-
	매도가능금융자산	-	-	205,057	45.17
	만기보유금융자산	-	-	87,930	19.37
	상각후 원가측정 유가증권	-	-	-	-
	관계 · 종속기업 투자주식	8,605	1.95	8,573	1.89
	대 출 채 권	100,130	22.64	104,731	23.07
	부 동 산	11,851	2.68	11,476	2.53
	비 운 용 자 산	26,786	6.06	17,700	3.90
	기 타 자 산	-	-	-	-
	특 별 계 정 자 산	90	0.02	81	0.02
자 산 총 계		442,266	100.00	454,006	100.00
부 채	책 임 준 비 금	325,343	73.56	328,143	72.28
	계 약 자 지 분 조 정	-	-	-	-
	기 타 부 채	31,201	7.05	36,642	8.07
	특 별 계 정 부 채	92	0.02	83	0.02
부 채 총 계		356,636	80.64	364,868	80.37
자본	자 본 총 계	85,630	19.36	89,138	19.63
부 채 와 자 본 총 계		442,266	100.00	454,006	100.00

* 주요변동요인 : 자산총계 및 부채와 자본총계는 442,266억원으로 전동기 대비 11,740억원 감소 하였습니다. 이는 회계기준의 변경(22.2Q IFRS17/IAS39, 23.2Q IFRS17/9기준)의 반영, 책임준비금 전기 대비 2,800억원 감소, 기타부채 전기 대비 5,441억원 감소된 사항이 반영된 값입니다.

* 동 자료는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감사보고서 상의 공시용 재무제표와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II. 자산의 건전성

3-1. 자산건전성(부실자산비율)

(단위: 억원, %, %p)

구 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전년대비 증감
가중부실자산(A)	586	541	45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B)	416,991	465,831	(-)48,840
비율(A/B)	0.14	0.12	0.02

* 주요변동요인 : IFRS 17 下 보험약관대출 분류대상자산 제외, AI125 분류대상자산 항목 변경

3-2. 유가증권투자 및 평가손익

(단위 : 억원)

구 분		공정가액 ¹⁾	평가손익	
일반 계정	당기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A)	주 식	1,440	33
		출 자 금	2,310	159
		채 권	4,670	86
		수 익 증 권	88,902	649
		외화표시유가증권	9,123	(-)6
		기타유가증권	1,202	5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측정 유가증권 (B)	주 식	37	(-)3
		출 자 금	0	0
		채 권	114,912	(-)15,475
		수 익 증 권	0	0
		외화표시유가증권	63,386	(-)14,231
		기타유가증권	3,134	(-)159
	상각후원가측정 유가증권 (C)	채 권	0	0
		수 익 증 권	0	0
		외화표시유가증권	0	0
		기타유가증권	0	0
관계, 종속기업 투자주식(D)	주 식	8,605	0	
	출 자 금	0	0	
	기 타	0	0	
소 계(A+B+C+D)		297,721	(-)28,894	
특별계정	주 식	13	1	
	채 권	6	0	
	수 익 증 권	43	0	
	외화유가증권	0	0	
	기타유가증권	0	0	
	소 계	62	1	
합 계		297,783	(-)28,893	

주1) 대여유가증권은 해당항목에 합산함

주2) 특별계정은 실적배당임

IV. 자본의 적정성

4-1. B/S상 자기자본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3.2Q)	당분기-1분기 (23.1Q)	당분기-2분기 (22.4Q)
자본총계	85,630	80,468	50,502
자본금	354	354	354
자본잉여금	379	379	379
신종자본증권	-	-	-
이익잉여금	85,647	80,922	63,582
자본조정	(-),525	(-),525	(-),525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75	338	(-),288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22년까지 IFRS4/IAS39 기준, '23년부터 IFRS17/9 기준)

4-2. 지급여력비율

* 지급여력비율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V. 수익성

(단위 : 억원, %, %p)

구분	당기 (23.2Q)	전년 동기 (22.2Q)	증감
투자이익(A)	15,603	13,781	1,822
경과운용자산(B)	435,547	403,102	32,445
(1) 운용자산이익률(A/B)	3.58	3.42	0.16
(2) 영업이익률	11.67	5.27	6.40
(3) 총자산수익률(ROA)	4.12	4.10	0.02
(4) 자기자본수익률(ROE)	20.26	23.15	(-)2.89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항목별 적용 회계기준 하단 참조)

* 운용자산이익률, 영업이익률 :

22.2Q IFRS4/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단, 직전 1년 실적 산출시 23년 IFRS17/9, 22년 IFRS17/IAS39 적용

* 총자산수익률(ROA), 자기자본수익률(ROE) : 22.2Q IFRS17/IAS39 기준, 23.2Q IFRS17/9 기준

VI. 위험관리

6-1. 비례성원칙 적용에 관한 사항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2. 생명·장기손해보험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3) 재보험정책

① 개요

매년 종목별(일반/자동차/장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향후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도 평가'는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S&P BBB+ 이상 또는 A.M. Best A- 이상)
-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에 등재 여부

'집중도 평가'는 재보험사의 부도에 의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재보험사별, 국가별로 산출하여 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177,649	0	0	0
비 중	98.0%	0.0%	0.0%	0.0%

주1)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 백만원)

구 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181,233	0	0	0	181,233
비 중	100.0%	0.0%	0.0%	0.0%	100.0%

6-3. 일반손해보험위험 관리

1) 개념 및 위험액 현황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2) 측정(인식) 및 관리방법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3) 가격설정(pricing)의 적정성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4) 지급준비금 적립의 적정성

① 지급준비금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보유지급준비금
일반	753,471
자동차	953,958
합계	1,707,430

주1) IFRS17기준 일반손해보험 준비금 부채에서 보험미수금 및 보험미지급금을 제외

② 보험금진전추이

[일반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304,144	471,104	507,404	528,894	547,685
당기(당반기)-3년	312,400	459,521	504,055	525,951	-
당기(당반기)-2년	320,937	496,795	540,871	-	-
당기(당반기)-1년	289,226	486,456	-	-	-
당기(당반기)	376,773	-	-	-	-

[자동차보험]

- 보험금 진전추이

(단위 : 백만원)

진전년도 사고년도	1	2	3	4	5
당기(당반기)-4년	2,068,675	2,399,205	2,451,840	2,483,122	2,497,814
당기(당반기)-3년	2,212,216	2,545,876	2,590,704	2,614,300	-
당기(당반기)-2년	2,282,073	2,643,670	2,687,667	-	-
당기(당반기)-1년	2,339,482	2,710,321	-	-	-
당기(당반기)	2,598,043	-	-	-	-

5) 보험위험의 집중 및 재보험 정책

① 개요

매년 종목별(일반/자동차/장기)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을 수립한 후 위험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재보험 위험관리전략에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기존 재보험 출재현황 및 분석
- 향후 출재 전략 방향
- 위험보유한도
- 단일 재보험사 최대출재비율

특약보험 및 임의보험 모두 '재보험자 선택 및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재보험자에 대한 안전도 및 집중도 평가를 실시하여 거래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안전도 평가'는 공개정보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국내외 감독기관이 정한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 충족 여부
-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등급(S&P BBB+ 이상 또는 A.M. Best A- 이상)
- 보험개발원 재보험사 Listing에 등재 여부

'집중도 평가'는 재보험사의 부도에 의해 당사에 미칠 수 있는 금전적 피해를 재보험사별, 국가별로 산출하여 한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② 상위 5대 재보험자 편중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상위 5대 재보험자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출재보험료	244,404	0	0	0
비중	58.2%	0.0%	0.0%	0.0%

주1) 출재보험료의 비중은 전체 재보험료대비 비중을 기재

③ 재보험사 군별 출재보험료

(단위: 백만원, %)

구분	AA- 이상	A+ ~ A-	BBB+이하	기타	합계
출재보험료	409,904	2,148	0	7,534	419,587
비중	97.7%	0.5%	0.0%	1.8%	100.0%

* 기타 재보험자(무위험/무등급): 국가재보험(한국환경산업기술원) 36.3억원, 해외재보험자(FRONTING ROYAL & SUN ALLIANCE INSUREANCE PLC 등) 39억원 입니다.

6-4. 시장위험 관리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5. 신용위험 관리

* K-ICS관련 내용은 9월말 공시 예정임(보험업감독규정 부칙 제3조)

6-6. 유동성위험 관리

1) 개념 및 유동성갭 현황

① 개념

유동성위험이란 자금의 조달, 운용 기간의 불일치 또는 예기치 않은 자금의 유출 등으로 일시적 자금부족 사태가 발생하거나, 자금부족 해소를 위한 고금리 자금의 조달, 보유 유가증권의 불리한 매각 등으로 손실을 입게 될 위험을 의미합니다.

② 유동성갭 현황 (만기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3개월이하	3개월초과 ~ 6개월 이하	6개월초과 ~1년 이하	합 계
자 산 (A)	현금과 예치금	6,065	400	1,300	7,765
	유가증권	597,636	0	216,965	814,601
	대출채권	182,023	158,794	438,696	779,513
	기 타	6,469	27,890	39,760	74,120
자산 계		792,193	187,084	696,721	1,675,999
부 채 (B)	해약환급금	155,879	154,867	336,548	647,294
	차입부채	0	0	0	0
	부채 계	155,879	154,867	336,548	647,294
유동성갭 (A-B)		636,314	32,217	360,173	1,028,704

2) 인식 및 관리방법

잔존만기 3개월/6개월/1년 이내의 유동성 자산 대비 추정 부채 유출액을 통해 유동성위험을 측정 중이며, 유동성갭과 유동성비율 분석을 통해 급격한 단기 지급불능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유동성 자산 보유하도록 관리 중입니다. 또한 단기자금조달 약정을 아래와 같이 맺어 단기 지급불능 사태에 대비 중입니다.

<단기자금조달처 약정 현황>

구 분	신한은행		하나은행	시티은행
차월구분	일중차월	당좌차월	일중차월	일중차월
약정금액	200억원	20억원	100억원	200억원

※별도 재무제표 기준

VII. 기타 일반 현황

7-1.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

- 해당사항 없음

7-2. 재보험 현황

1) 국내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기 (23.2Q)	직전 반기 (22.4Q)	반기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150	145	5
		수재보험금	122	61	61
		수재보험수수료	14	13	1
		수재차액(A)	14	71	(-)57
내	출재	출재보험료	3,916	3,939	(-)23
		출재보험금	2,804	4,163	(-)1,359
		출재보험수수료	309	308	1
		출재차액(B)	(-)803	532	(-)1,335
순수지 차액 (A+B)		(-)789	603	(-)1,392	

* 주요변동요인 : 국내 순수지차액은 (-)789억원으로 전동기말 대비 1,392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내의 수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57억 감소하였고 출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1,335억 감소하였습니다.

2) 국외 재보험거래현황

(단위: 억원)

구 분		당기 (23.2Q)	직전 반기 (22.4Q)	반기대비 증감액	
국	수재	수재보험료	503	519	(-)16
		수재보험금	257	324	(-)67
		수재보험수수료	120	133	(-)13
		수재차액(A)	126	62	64
외	출재	출재보험료	2,091	1,804	287
		출재보험금	507	1,019	(-)512
		출재보험수수료	264	235	29
		출재차액(B)	(-)1,320	(-)550	(-)770
순수지 차액 (A+B)		(-)1,194	(-)488	(-)706	

* 주요변동요인 : 국외 순수지차액은 (-)1,194억원으로 전동기말 대비 706억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외 수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64억원 증가하였고 출재차액은 전반기말 대비 770억원 감소하였습니다.

7-3. 해약환급금준비금 등의 적립

(단위 : 억원)

구 분	당분기 (23.2Q)	직전분기 (23.1Q)
이익잉여금	85,647	80,922
대손준비금	262	108
비상위험준비금	14,489	14,120
해약환급금준비금	27,146	24,112
보증준비금	-	-

* 주요변동요인 : 회계기준의 변경 ('22년까지 IFRS4/IAS39 기준, '23년부터 IFRS17/9 기준)

* 이익잉여금은 85,647억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725억원 증가하였습니다. 대손준비금은 전분기말 대비 154억원, 비상위험준비금은 전분기말 대비 369억원, 그리고 해약환급금준비금은 전분기말 대비 3,034억원 증가된 사항이 반영되었습니다.

7-4.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1) 2022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2년)
계량 지표	1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사항	해당없음
	2	금융사고 및 휴면금융자산 찾아주기	해당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체계 구축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전담조직·인력	해당없음
	4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없음
	5	금융상품 판매 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	해당없음
	6	금융상품 판매후단계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와 민원관리	해당없음
	7	임직원에게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교육 및 보상체계 운영	해당없음
	8	기타 금융소비자 정보제공 및 취약계층 등의 피해방지 관련 사항	해당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2021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2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6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8개 항목

* (2021년)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회사는 2022년 자체 자율진단 시행으로 결과공시 대상이 아님

2) 2021년 평가결과

구분		평가항목	항목별 평가결과 (2021년)
계량 지표	1	민원 사전예방 관련 사항	해당없음
	2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해당없음
비계량 지표	3	금융소비자보호 전담조직 관련 사항	해당없음
	4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5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해당없음
	6	민원 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해당없음
	7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해당없음

주1) [평가근거] (2021년~)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

* (2016년~2020년)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손해보험업권 전체의 1% 이상인 손해보험사, 영업규모가 작거나 민원건수가 적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평가대상회사를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씩 나눠서 평가 (3년 주기 평가)

- 단, 전년도 실태평가 결과,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주3)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 : 2020년 중 소비자보호활동

비계량평가 : 2020~2021년 6월 중 소비자보호활동

주4) [평가항목] 2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항목, 총 7개 항목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회사는 2021년 자체 자율진단 시행으로 결과공시 대상이 아님

3) 2020년 평가결과

구 분		항목별 평가결과 (2020년)	
계량 항목	1	민원발생건수	양호
	2	민원처리노력	양호
	3	소송건수	보통
	4	영업 지속가능성	양호
	5	금융사고	양호
비계량 항목	6	소비자보호 조직 및 제도	양호
	7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8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양호
	9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보통
	10	소비자정보 공시	양호
종합 등급		양호	

- 주1) [평가근거] 금융소비자보호모범기준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 받음
- 주2) [평가 대상회사] 영업규모 및 민원건수가 업권 전체의 1%이상인 회사로, 민원건수가 적거나 영업규모가 작은 회사는 해당년도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주3) [평가 대상기간] 2019년 중 소비자보호 활동
- 주4) [평가항목] 5개 계량평가 항목 및 5개 비계량평가
- 주5) [평가등급] 5등급 체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7-5 민원발생건수

* 대상기간 : 당분기 2023년 2분기(2023. 4. 1.~2023. 6. 30.)
전분기 2023년 1분기(2023. 1. 1.~2023. 3. 31.)

※ 동 민원건수는 중복반복민원, 단순상담 및 질의사항, 금감원 민원 中 자율조정성립건, 금감원 민원 中 B2B민원, 금감원 민원 中 소송관련 민원은 제외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대상기간
- 당분기 : 2023년 2분기(2023. 4. 1. ~ 6. 30.)
- 전분기 : 2023년 1분기(2023. 1. 1. ~ 3. 31.)

1)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자체민원	601	668	11.15	2.74	3.02	10.22	
대외민원	1,069	1,166	9.07	4.87	5.26	8.01	
합계	1,670	1,834	9.82	7.61	8.28	8.80	

주1) 금융감독원 등 타기관에서 접수한 민원 중 이첩된 민원 또는 사실조회 요청한 민원, 단 해당 기관에서 이첩 또는 사실조회 없이 직접 처리한 민원은 제외
주2)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2) 유형별 민원 건수

구 분	민원 건수			환산건수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	
유 형	보험모집	162	160	-1.23	0.74	0.72	-2.70
	유지관리	198	203	2.53	0.90	0.92	2.22
	보상 (보험금)	1,171	1,395	19.13	5.34	6.30	17.98
	기 타	139	76	-45.32	0.63	0.34	-46.03
합계	1,670	1,834	9.82	7.61	8.28	8.80	

주) 해당 분기말일 회사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3) 상품별 민원건수

구 분		민원 건수 ^{주3)}			환산건수 ^{주2)} (보유계약 십만건 당)			비 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전분기	당분기	증감률(%)	
상 품	일반보험	98	73	-25.51	10.01	7.38	-26.27	
	장기 보장성보험	813	1,002	23.25	5.23	6.38	21.99	
	장기 저축성보험	12	8	-33.33	3.70	2.50	-32.61	
	자동차보험	640	705	10.16	12.60	13.75	9.13	
기타 ^{주1)}		107	46	-57.01	-	-	-	-

주1) 해당 회사의 내부경영(주가관리, RBC 등) 관련 민원, 모집수수료, 정비수가 등 소비자 외 모집인·정비업체 등이 제기하는 민원, 보험 가입전 상품 외 민원, 다수계약(가입상품 미한정) 가입자의 상품관련 외 민원 등

주2) 해당 분기말일 상품별 보유계약 건수를 기준으로 항목별 산출

주3) 대출관련 민원 : 보험계약대출 관련 민원은 해당 상품 기준으로 구분하되, 담보·신용대출 관련 민원은 기타로 구분

※ '기타' 구분은 상품 외 민원으로 보유계약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환산건수'를 표기하지 않음

※ '기타' 구분의 환산건수가 산정되지 않으므로 별도 '합계'를 표기하지 않으며, 상품별 '민원 건수'의 총 합계(일반보험+장기보장성보험+장기저축성보험+자동차보험+기타)는 '1. 민원건수', '2. 유형별 민원 건수'의 각 '합계'와 일치

7-6. 불완전판매비율, 청약철회비율 및 유지율 현황

(단위 : 건. %)

구 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	
			방카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복합 ⁸	다이렉트 ⁹
< 불완전판매비율 ¹ >								
불완전판매비율	0.02%	0.02%	0.11%	0.02%	0.01%	0.01%	0.00%	0.00%
불완전판매건수	208	40	4	125	2	153	0	4
신계약건수	1,024,379	207,661	3,516	508,410	34,327	1,357,325	152	145,794
< 청약철회비율 ² >								
청약철회비율	2.44%	2.00%	4.61%	5.09%	7.53%	2.79%	13.82%	4.30%
청약철회건수	24,946	4,145	162	25,863	2,586	37,870	21	6,272
신계약건수	1,024,379	207,661	3,516	508,410	34,327	1,357,325	152	145,794

※ 신계약건수 대상 기간 : 22.7.1~23.6.30

(단위 : 백만원, %)

구 분	설계사	개인 대리점	법인대리점				직영	
			방카 ⁴	TM ⁵	홈쇼핑 ⁶	기타 ⁷	복합 ⁸	다이렉트 ⁹
< 유지율 ³ >								
13회차	90.26	93.59	73.18	79.49	77.52	89.86	0.00	86.43
유지계약액	539,192	143,913	10,348	110,565	5,688	620,368	0	24,549
대상신계약액	597,360	153,764	14,141	139,091	7,337	690,398	0	28,405
25회차	77.91	81.66	54.29	62.96	68.87	76.80	0.00	75.24
유지계약액	460,000	130,423	7,919	79,951	5,657	590,801	0	21,796
대상신계약액	590,433	159,721	14,587	126,982	8,214	769,260	0	28,970
37회차	64.74	66.90	74.50	45.73	60.05	66.59	0.00	61.08
유지계약액	327,868	97,170	32,050	51,881	6,375	428,077	0	10,574
대상신계약액	506,444	145,242	43,020	113,454	10,616	642,829	0	17,313
61회차	40.19	44.68	31.55	24.87	36.28	39.62	0.00	39.10
유지계약액	133,898	45,293	10,759	21,632	6,013	134,460	0	7,546
대상신계약액	333,170	101,364	34,100	86,986	16,575	339,377	0	19,296

※ 대상신계약액 대상 기간 : 산출월 기준 각 회차별 이전년도 동월 신계약액
유지계약액 대상 기간 : 22.7.1~23.6.30

- 1)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무효)건수 / 신계약건수 × 100
- 2) (청약철회건수 / 신계약 건수) × 100
- 3) (유지계약액 / 대상신계약액) × 100
- 4)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5) 전화 등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통신판매 전문보험대리점
- 6) 홈쇼핑사가 운영하는 보험대리점
- 7) 방카슈랑스, TM, 홈쇼핑을 제외한 법인대리점으로 일반적으로 대면모집 법인대리점
- 8) 대면모집과 비대면모집을 병행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직영 TM설계사의 경우 직영다이렉트 조직에 포함하여 작성)
- 9) 통신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보험회사 직영 모집조직

7-7. 보험금 부지급률 및 청구이후 해지비율 현황

1) 장기손해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1.44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16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13,161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900
보험금 청구건수 ⁴	911,448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558,399

※ 대상 기간 : 23.1.1~23.6.30

-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 2)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기타 청구권자의 청구행위가 없는 건 제외(만기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환급금, 2회차 이후의 분할 보험금 등)
- 3) 보험금 청구 건수 중 보험금이 부지급된 건수(동일청구건에 지급과 부지급 공존시 지급으로 처리)
- 4)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을 대상으로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건 중 지급심사가 동일기간내에 완료된 건수(사고일자 + 증권번호 + 피보험자 + 청구일자 기준*으로 산출)
* 동일한 사고라도 청구일자 상이한 경우, 별도 건으로 산출
- 5) 보험금 청구 계약건 중 보험금 청구 후 품질보증해지·민원해지 건수 및 보험금 부지급 후 고지의무 위반해지·보험회사 임의해지* 건수의 합계
* 계약자 임의해지 건 제외
- 6) 직전 3개 회계연도의 신계약 중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된 보험계약건(증권번호 기준, 중복 제외)

2) 자동차보험

(단위 : 건, %)

보험금 부지급률 ¹	0.49	청구이후 해지비율 ²	0.00
보험금 부지급건수 ³	3,119	보험금 청구 후 해지건 ⁵	1
보험금 청구건수 ⁴	630,347	보험금 청구된 계약건 ⁶	476,248

※ 대상 기간 : 23.1.1~23.6.30

- 1) (보험금 부지급건수 / 보험금 청구건수) × 100
- 2) (보험금 청구후 해지건수 /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 100
- 3) 보험금 청구건수 중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건수
- 4)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청구권자(피해자, 피해물 소유주 및 피보험자)가 약관상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지하여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한 건 중 보험금 지급/부지급 여부가 확정된 건수(사고일자, 사고접수일자, 증권번호, 사고번호, 피해자(물) 및 피보험자 등 기준으로 산출)
* 피해서열별로 추산보험금을 책정한 건수를 기준으로 작성

** 보험금 청구 포기건 및 피구상건 제외(다만, 소송 및 금감원 분쟁조정 진행중인건은 포함)

5) 보험금 청구 계약건수 중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계약 해지사유에 의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의무보험을 포함하여 보험을 해지한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 다음의 경우는 해지건수에서 제외

1) 피보험자동차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4항에 정한 자동차(의무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도로가 아닌 장소에 한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로 변경된 경우

2)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3) 피보험자동차의 말소등록으로 운행을 중지한 경우

4)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도난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피보험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2에서 정하는 '보험 등의 가입의무 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산출대상기간(상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1.1~6.30을 말하며, 하반기의 경우 해당연도의 7.1~12.31을 말한다.)동안 보험금 지급건수(B)가 1건 이상 발생한 보험계약 건수(증권번호 기준, 1년계약 기준, 중복 제외)

7-8. 사회공헌활동

7-8-1. 사회공헌활동 주요현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구분	사회공헌 기부금액	전담 직원수	내규화 여부	봉사인원		봉사시간		인원수		당기 순이익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임직원	설계사	
2Q 누적	2,116	3	○	2,328	-	5,400	-	4,639	22,235	918,128

7-8-2. 분야별 사회공헌활동 세부내용

(단위: 백만원, 시간, 명)

분야	주요 사회공헌활동	기부(집행)금액	자원봉사활동			
			임직원		설계사	
			인원	시간	인원	시간
지역사회.공익	소외계층 및 지역사회 공헌활동	682	1,608	3,960	-	-
문화.예술.스포츠	문화, 스포츠 분야 지원	481				
학술.교육	학술 포럼 지원	521				
환경보호	환경정화활동 등	17	720	1,440		
글로벌 사회공헌		-				
공동사회공헌	손보협회 사회공헌분담금	307				
서민금융	새희망힐링펀드	109				
기타	-	-				
총 계		2,116	2,328	5,400		

* 2023년 2분기 누적실적 기준임

7-9. 손해사정업무 처리현황

○ 기간 : 2023.1.1.~2023.6.30

(단위 : 건, 천원, %)

회사명	위탁 업체명 ^{주1)}	종 구분	계약 기간	총 위탁 건수 ^{주2)}	총 위탁 수수료	위탁 비율 (%) ^{주3)}	지급 수수료 비율 (%) ^{주4)}
DB 손해 보험	인스비전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1,990,211	2,138,706	14.65%	1.50%
	에이웬심사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749,740	850,151	5.52%	0.60%
	다스카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654,506	751,473	4.82%	0.53%
	리더스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628,422	715,384	4.62%	0.50%
	파란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469,331	538,011	3.45%	0.38%
	DB CAS(자회사)	정보입력	23.01.01~23.12.31	463,951	579,004	3.41%	0.41%
	케이엠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411,646	462,263	3.03%	0.32%
	미래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391,174	438,902	2.88%	0.31%
	해오름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323,065	362,574	2.38%	0.25%
	해성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307,303	344,029	2.26%	0.24%
	탑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126,341	140,025	0.93%	0.10%
	국제손해사정	정보입력	23.01.01~23.12.31	20,523	22,493	0.15%	0.02%
	DB CAS(자회사)	4종	23.01.01~23.12.31	1,600,152	23,296,271	11.78%	16.35%
	에이웬심사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896,236	2,728,227	6.60%	1.92%
	리더스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673,135	2,305,276	4.95%	1.62%
	베스트손해사정	4종	23.04.01~23.12.31	16,087	75,624	0.12%	0.05%
	C&S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1,072	298,168	0.01%	0.21%
	타임즈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558	158,156	0.00%	0.11%
	TSA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314	93,230	0.00%	0.07%
	유니온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307	82,953	0.00%	0.06%
	프라임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256	68,981	0.00%	0.05%
	유월비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207	55,038	0.00%	0.04%
	에이플러스손해사정	4종	23.01.01~23.12.31	196	56,180	0.00%	0.04%
	DB자동차보험손해사정 (자회사)	3종	23.01.01~23.12.31	692,445	55,922,422	5.10%	39.26%
	한서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44	55,714	0.00%	0.04%
	한결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38	91,207	0.00%	0.06%

모든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34	142,631	0.00%	0.10%
한일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8	74,010	0.00%	0.05%
새한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8	127,902	0.00%	0.09%
한바다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2	41,359	0.00%	0.03%
한리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10	39,987	0.00%	0.03%
푸름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9	14,110	0.00%	0.01%
네스코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5	9,600	0.00%	0.01%
전한 손해사정(주)	2종	23.04.01~24.03.31	2	38,936	0.00%	0.03%
이룸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20,006	2,621,646	0.15%	1.84%
다해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4,431	132,930	0.03%	0.09%
한국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845	493,337	0.01%	0.35%
고려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680	478,320	0.01%	0.34%
인코크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550	450,994	0.00%	0.32%
케이원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82	223,865	0.00%	0.16%
김스코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59	288,930	0.00%	0.20%
세종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46	262,060	0.00%	0.18%
이앤에스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44	258,336	0.00%	0.18%
세계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321	189,320	0.00%	0.13%
피에스엘손해사정	1종	23.04.01~24.03.31	253	130,737	0.00%	0.09%
중앙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170	112,469	0.00%	0.08%
태양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106	91,327	0.00%	0.06%
드림손해사정	1종	23.04.01~24.03.31	66	39,940	0.00%	0.03%
진손해사정	1종	23.04.01~24.03.31	47	31,139	0.00%	0.02%
티앤지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26	12,540	0.00%	0.01%
대양화재특종 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8	4,963	0.00%	0.00%
태평양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7	4,288	0.00%	0.00%
카스코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6	2,743	0.00%	0.00%
코마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5	2,930	0.00%	0.00%
보람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4	2,390	0.00%	0.00%
에스에이에스 손해사정(주)	1종	23.04.01~24.03.31	4	2,382	0.00%	0.00%
인스비전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종:23.01.01~23.12.31	726,622	2,323,103	5.35%	1.63%
파란손해사정(주)	1,4종	1종:23.04.01~24.03.31	421,781	2,033,908	3.10%	1.43%

		4중:23.01.01~23.12.31				
해성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368,987	2,343,629	2.72%	1.65%
다스카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343,510	1,867,625	2.53%	1.31%
미래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282,778	1,791,903	2.08%	1.26%
DB CSI(자회사)	1,4중	1중:23.01.01~23.12.31 4중:23.01.01~23.12.31	269,366	25,702,585	1.98%	18.04%
케이엠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242,746	948,955	1.79%	0.67%
해오름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143,271	1,164,263	1.05%	0.82%
탑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94,788	1,118,705	0.70%	0.79%
Hits손해사정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93,867	849,987	0.69%	0.60%
에이원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11,801	1,125,370	0.09%	0.79%
아세아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1,594	508,443	0.01%	0.36%
클라우드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4.01~23.12.31	884	30,276	0.01%	0.02%
솔로몬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504	283,328	0.00%	0.20%
서울손해사정(주)	1,4중	1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95	30,633	0.00%	0.02%
국제손해사정(주)	1,2,4중	1,2중:23.04.01~24.03.31 4중:23.01.01~23.12.31	138,903	1,366,966	1.02%	0.96%
총계	-	-	13,587,861	142,446,262	100.00%	100.00%

- 주1) 위탁업체가 자회사인 경우 위탁업체명에 자회사임을 별도로 명기
주2) 업무위탁이 종결되어 수수료 지급 완료된 건 기준으로 작성
주3) 위탁비율 = 업체별 총 위탁 건수 / 전체 위탁건수
주4) 지급수수료 비율 = 업체별 총 수수료 지급액 / 전체 수수료 지급액

7-10. 손해사정사 선임 등

1)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선임거부 건수 및 사유

○ 기간 : 2023.1.1.~2023.6.30.

①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선임 거부 건수

(단위: 건)

구 분	연도(당해연도)		연도(전년도)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선임 요청 건수	선임 거부 건수
상반기	21	0	7	0
하반기				
연도 전체				

주1) 대상 : 보험금이 청구된 건 중 손해사정 대상 건

주2) 선임 요청 건수 : 손해사정사 선임 관련 안내일로부터 3영업일 내에 선임 관련 의사를 표시한 건수

주3) 선임 거부 건수 : 소비자가 손해사정사 선임을 요청하였으나 보험회사가 동의 거부한 건수

※ 상반기 공시자료의 경우 상반기만 표시(표에서 하반기, 연도전체 생략) 하여 작성

2) 선임 동의 기준(2023년 8월 21일 현재)

※ 회사별 선임동의 기준 기입(반기공시 10일 전 기준)

- 별첨 참조

I. 제정배경

1.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및 손해보험협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2020년 1월 1일 시행)에 근거함
2.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권 확대운영을 통해 동의기준을 점차 보완 확대할 예정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보험계약자 등의 손해사정사 선임)

② 보험계약자 등이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의한다.

1. 손해사정이 착수되기 이전에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회사에게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하여 동의를 얻은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보험회사가 보험사고 통보 (제3보험상품의 경우 접수가 완료된 날을 말한다)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경과하여도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손해사정사의 보수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등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협회는 제2항 제1호에 따른 동의와 관련하여 보험회사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동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II. 손해보험 공통

다음의 보험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은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은 거부할 수 있음

- 화재보험계약, 해상보험계약 (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책임보험계약, 기술보험계약, 권리보험계약, 도난보험계약, 유리보험계약, 동물보험계약, 원자력보험계약, 비용보험계약, 날씨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사고

- 배상책임의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청구권자간의 보험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에 관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 재물보험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에 즉시 착수하지 않으면 손해액 증가 또는 보험목적물의 추가 훼손의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함

손보험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에 따라 제정 운영)

제5조(손해사정사 선임 동의 기준 운영 등)

①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권자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손해사정사의 선임의사를 통보한 경우 동의 여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세부 기준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전문보험계약자의 계약. 다만, 실손의료보험계약을 포함하는 단체보험상품 및 여행보험상품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2.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보험계약
3.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정한 동의 기준의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보험업법시행령 제1조의2제3항

법 제2조제1호나목(손해보험상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말한다.

1. 화재보험계약
2. 해상보험계약 (항공·운송보험계약을 포함한다)
3. 자동차보험계약
4. 보증보험계약
5. 재보험계약
6. 책임보험계약
7. 기술보험계약
8. 권리보험계약
9. 도난보험계약
10. 유리보험계약
11. 동물보험계약
12. 원자력보험계약
13. 비용보험계약
14. 날씨보험계약

III. 제3보험

실손의료비 단독청구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사망, 후유장해, 진단비, 수술비 보험금 산정에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가 아닌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이 달라지고 손해사정 결과에 따라 초과, 과소산정 민원이 빈번이 발생하고
- 지급보험금에 따른 성공보수를 별도로 약정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거부함

IV.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 동의 기준

1. 실손의료비 단독 청구건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동의하여야 함. 다만 아래의 거부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2. 실손의료비 담보 단독 청구건의 선임 거부 기준

- 청구서류 만으로 심사가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 실손의료비 단독청구건이라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의 손해사정이 함께 필요한 경우
(예: 실손의료비만을 청구하였으나 진단비에 대한 지급 사유 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병원과 관련한 비급여 등의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 보험사기, 모럴해저드, 역선택과 관련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손해사정보고서 작성이 불필요한 단순 차트 및 소견서 징구 의뢰건

1. 손해사정사 재선임 대상

(선임 거부기준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선임된 손해사정사가 기준에 부적합하여 재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손해사정사가 4종/신체 손해사정 영업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 손해사정사가 한국손해사정사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업체가 아닌 경우
- 손해사정사가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칠 소지가 있는 경우

손보험회 "손해사정 업무위탁 및 손해사정사 선임 등에 관한 모범규준" (보험업감독규정 제9-16조제6항에 따라 제정 운영)

제8조(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한 특례)

- ①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청구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청구권자의 손해사정사 선임 요청에 원칙적으로 동의하여야 한다. 단, 진단비, 수술비, 일당, 후유장해 등 정액 담보 보험금과 함께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여 조사나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선임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 ③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담보에 대해 제5조제1항의 동의기준보다 완화된 별도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VIII. 재무제표

- 별첨 참조